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784 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이종배·엄태영·조승환

김성원 · 성일종 · 박덕흠

임이자 · 김승수 · 박충권

송석준 · 신성범 · 유영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위 '김호중 사건'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'술타기' 수법이 더욱 기 승을 부리고 있음. 2020년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기 전 소주 1병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.169%에 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한 사건에서 "음주 운전자가 처벌 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지만, 이 를 처벌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결론"이라고 판시 하였음.

또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범죄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, 처벌이 미미하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. 작년 음주 운전 적발건수 총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,007건으로, 음주 운전에서 42.3%의 높은 재범 률을 보이는 이유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'술타기'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,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44조 제5항, 제148조의 제1항 1호 및 2호, 제2항, 제3항 제1호, 제5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.

제148조의2제1항제1호 중 "1년"을 "2년"으로, "500"을 "1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6년"을 "10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1년"을 "2년"으로, "500"을 "1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5년"을 "10년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제1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	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
전 금지) ① ~ ④ (생 략)	전 금지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
	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
	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
	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
	<u>면 아니 된다.</u>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148조의2(벌칙) ① 제44조제1항	제148조의2(벌칙) ①
또는 제2항을 위반(자동차등	
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	
로 한정한다. 다만, 개인형 이	
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	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	
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	
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	
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	
제2항을 위반한 사람(형이 실	
효된 사람도 포함한다)은 다음	
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	
1.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	1
은 <u>1년</u> 이상 6년 이하의 징역	<u>2년</u>

- 이나 <u>500</u>만원 이상 3천만원
- 2.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.2퍼센 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<u>6</u>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3. (생략)
-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 하지 아니하는 사람(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로 한정한다)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 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 벌한다.
- 1. 혈중알코올농도가 0. 2퍼센
 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<u>5</u>
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

1 <u>천</u>
2
<u>10년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
<u>2년</u>
<u>1천</u>
③
1
<u>1</u>
<u>0년</u>

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.·3. (생 략) ④ (생 략) <신 설>

- _____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 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 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